

「임실군 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게재하여 주민의 알권리 충족 및 의회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임실군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 2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 2. 11.

임실군의회 의장



임실군 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제안이유

제명을 통일하고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과 탄력적인 대처를 위하여 전문위원의 직급을 조정하고자 함.

2.주요내용

가. 제명 변경

나. 인용조문 변경(안 제1조)

다. 전문위원의 직급 변경(안 제3조의 별표)

3.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심사예고 : 5일

임실군 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임실군 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임실군 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을 “임실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규칙은 「임실군 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제5조”를 “규칙은 「임실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제6조”로 한다.
“별표”를 다음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전문위원별 직급(제3조관련)

위원회명	직 위	직 급	비고
운영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지방행정사무관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지방행정사무관 · 지방농업사무관 지방시설사무관 · 지방사회복지사무관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임실군 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u> <u>규칙</u>	<u>임실군의회의 사무기구 사무분장</u> <u>규칙</u>
제1조(목적) 이 <u>규칙</u> 은 「임실군 <u>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u> <u>수 조례</u> 」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 사무과의 사무분장 등 조 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u>규칙</u> 은 「임실군 <u>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u> <u>수 조례</u> 」 제6조----- ----- ----- -----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의회사무기구의 설치기준 등) ① 법 제102조에 따라 설치하는 시·도의 의회사무처, 시·군·구의 의회사무국이나 의회사무과의 설치기준과 의회사무처장, 의회사무국장이나 의회사무과장 등 의회사무기구 공무원의 직급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② 시·도 의회사무처와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하나로 합쳐져 관할 인구가 100만 명 이상이 된 시 의회사무국에 하부조직으로 담당관을 설치할 수 있으며, 시·도와 시·군·구의 위원회에 두는 전문위원의 직급과 정수(定數)는 별표 5와 같다.

③ 제2항에 따른 전문위원은 소속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때 소속위원회 위원장의 지휘를 받으며, 그 외의 일반적인 사무는 의회사무처장이나 의회사무국장·의회사무과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④ 시·도와 시·군·구의 의회사무기구에 두는 담당관과 전문위원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이 경우 미리 지방의회 의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⑤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의회사무기구(위원회를 포함한다)에 두는 정책지원 전문인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일반직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한다.

1. 시·도의 경우: 6급 이하
2. 시·군·구의 경우: 7급 이하

⑥ 제5항에 따라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임기제공무원으로 임명하는 경우에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제1호에 따른 일반임기제공무원(이하 “일반임기제공무원”이라 한다)만으로 임명할 수 있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임실군 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 재정수반요인

- 해당사항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임실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5항제2호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4. 작성자 : 임실군의회 장종민 의원